

■ 중국·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 3]

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(제4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관세율(%)
중국	1. 산시타이강(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., Ltd.) 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. 텐진타이강(Tianjin Taigang & TPCO Stainless Steel Co., Ltd.) 나. 산시정밀(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., Ltd.)	23.69
	2. 리스코(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25.82
	3. 그 밖의 공급자	24.83
인도네시아	4. 인니청산(P.T.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)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. 광칭(P.T.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) 나. 루이푸(P.T.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)	25.82
	5. 그 밖의 공급자	25.82
대만	6. 유스코(Yieh United Steel Corporation)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. 이에마우(Yieh Mau Corp.) 나. 탕영(Tang Eng Iron Works Co., Ltd.)	9.47
	7. 왈신(Walsin Lihwa Corporation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7.17
	8. 그 밖의 공급자	9.07

비고: 제 3 호·제 5 호 또는 제 8 호의 공급자가 제 1 호·제 2 호·제 4 호·제 6 호 또는 제 7 호의 공급자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3 호·제 5 호 또는 제 8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